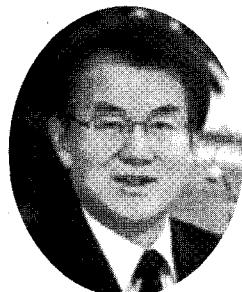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회계예규 개정 완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출범 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을 지난해 연말 확정하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공정거래정책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대한전문건설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소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장개혁의 추진 방법도 정부의 직접규율보다는 시장자유 감시를 중시하고, 정부의 직접규율을 시장자율규율로 전환해 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 방향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강철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8%, 고용의 85.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이며, 중소기업 매출액의 약 절반 정도를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하도급 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지급 등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하도급관행 시정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강철규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주요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상승률, 완제품가격상승률, 납품단가상승률을 비교 평가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아울러 곧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에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질서확립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형 발주처와 저가하도급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면제대상 확대, 자기공사 제외 등 지급보증제도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려는 움직임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에서 면제대상을 지나치게 제





한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면서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상반되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대상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파악에 대한 질문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건설공체조합의 계약이행보증건수 대비 지급보증건수 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회계예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강철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4분기 중에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와 관련해 강철규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관행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 하도급법 위반업체 비중이 지난 99년 89.3%에서 2001년 71.1%, 2003년 62.8%로 대폭 감소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도 지난 99년 34.8%에서 2001년 64.3%, 2003년 78.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강철규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법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10만여 중소하도급업체에 약 1천 900억원을 지급토록 하여 연쇄부도 방지 및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서면실태조사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작년 3만5천 개에서 올해 4만 개로 늘어난 조사대상을 2007년까지 7만 개로 확대하고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제 개정 등을 통해 강화된 하도급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직제를 개정하여 하도급국 13명과 지방사무소 4명 등 총 17명의 하도급 담당직원을 증원하였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하도급 단가인하 근절에 특히 초점을 두고 서면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현장조사



를 실시하여 상습적·악질적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간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 강철규 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지식화, 디지털화, 글로벌화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점차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도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시스템간의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도 과거 전속적·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사업상 동반자로 인식하고 개방적·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건설업체는 고부가치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관행을 없애고 기술·자금·정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기술개발·원가절감·공기단축에 노력함으로써 서로 원원(Win-Win)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결제 유도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액공제, 벌점 및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현금성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우선 올해 91개(건설 회사 40개)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7개(건설회사 6개) 모범업체를 포상함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거래의 지급기한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카르텔 방지책에 대한 질문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올해를 ‘카르텔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조달청 등 대형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통보 받아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상시정보수집체계’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통보대상공사 규모를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통보대상기관도 현재 8곳에서 더 늘려나가고, 또한 ‘공공기관 입찰상황판’을 마련·운영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철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한도도 대폭 상향조정(관련 매출액의 5% → 10%)해 카르텔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카르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1억원인 제보자 보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신고자 감면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